

경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교수·학습법 개발, 교수·학습 지원 및 상담, 교육매체 제작 지원, e-Learning 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본교의 우수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센터는 우리대학교 교원 및 재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학습 상담, 매체 제작과 운용 지원, 교육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무처 주관 하에 시행 한다.

제3조의2(업무 및 기능)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원들의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학생들의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교수학습 지원시스템(Smart LMS)의 관리 및 운용
4.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지원
5. 학생 학습 상담 지원
6. 교수학습을 위한 매체 제작 지원 및 운용
7. 대학교육종합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실행 및 분석 내용 보고
8. 강의방식의 다양화 지원
9. 학습역량강화위원회의 주관부서로서의 역할 수행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4조(임직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직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1명
2. 팀장 1명

3. 운영위원회 위원 약간 명

4. 연구원 및 행정지원 직원 약간 명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우리대학교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상담교원) 상담교원은 우리대학교의 교원 중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규정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업의 내용과 방법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업의 선정, 채택,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학습역량강화 지원과 관계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편성·운영·평가·개선 사항
8.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0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재 정

제11조(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대학교의 지원금, 산업체 및 개인의 출연금, 각종 연구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5장 보 칙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